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호 중 “변경하려는”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를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로 한다.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다만, 법 제92조제6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인증 및 제6의2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내야 한다.

별표 14 제1호사목1)마) 중 “영업 또는”을 “영업,”으로,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화장품을 제조하는 영업 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을”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4)가) 단서 중

“수”를 “수 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로 한다.

별표 23 II.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3일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변경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신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

별표 27 표의 제2호가목 중 “제3호를”을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 라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의 다목(중전의 나목) 중 “제4호”를 “제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별표 24 제1호마목을 위반하여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한 경우	100	200	300
---	-----	-----	-----

별표 27 표의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별표 24 제6호나목을 위반하여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폐기,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는 등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한 경우	300	400	500
---	-----	-----	-----

별표 27 표의 제2호바목 중 “다목”을 “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의 유의 사항란 중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 중 “변경하려는”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차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52호서식 수수료란 중 “200,000원”을 “「식품위생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중 “100,000원”을 “「식품위생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 별표 24 제6호가목, 별표 26 제2호나목, 별지 제52호서식·제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3 II.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제4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7 표의 제2호마목·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u>변경하려는 경우만</u> 해당한다)	4. ----- ----- <u>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변경하려</u> -----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u>제86조의2(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법 제70조의4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	<u><삭 제></u>
1.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지출 계획서	
<u>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관청, 면허관청 또는 신고·등록·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나 기관이 국</u>	<u>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다만, 법 제92조제6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인증 및 제6의2</u>

현행	개정안
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호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 수수료는 정부 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 별 ----- --.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제95조제2항 관련)

1. 식재료관리

가. 식재료는 선도가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의 조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

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마.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폐기 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사용·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관관리

가. 식품등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쥐 또는 바퀴벌레 등 위해 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식품등은 세척제나 화학물질, 농약 등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식품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세척 등 전처리를 거쳐 식품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등은 바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조리관리

가. 육류, 어류 등 동물성원료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나. 조리한 식품은 위생적인 용기 등에 넣어 조리하지 않은 식품과 교

차오염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은 부식 등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야채 또는 과일을 살균 또는 세척할 때에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 또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해동은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한 번 해동한 식품은 다시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배식관리

가.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배식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배식 중에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식품은 온도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종료하여야 한다.

5. 시설관리

가.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다.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6. 위해요소 관리 등

가. 식재료의 검수, 보관, 조리, 배식 등 급식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록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

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